

경기분과위원회 규정

2016. 03. 02

社團法人 韓國女子프로골프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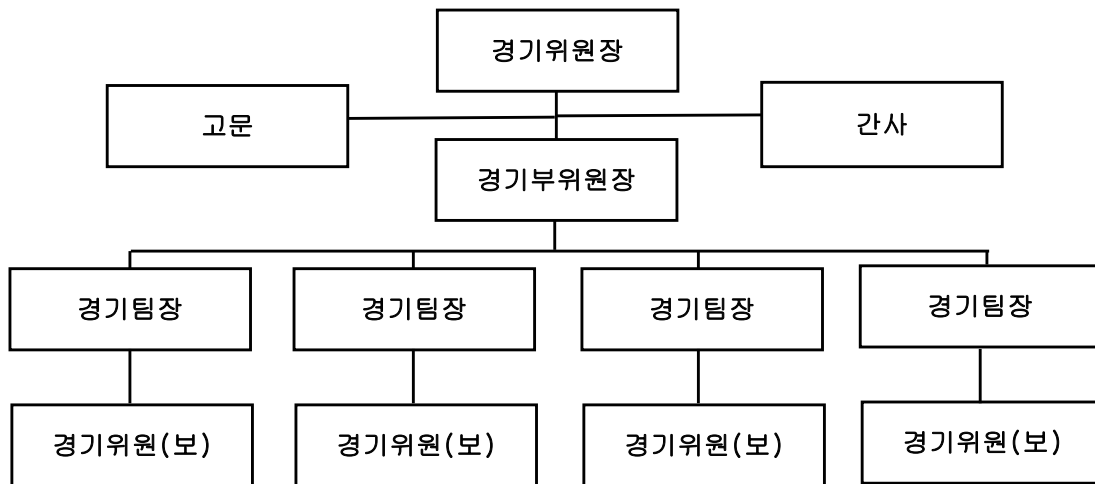
제1조(근거)

본(本) 분과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 경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本) 위원회 규정은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를 기획, 운영, 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 조직도상 직책인원 수는 실구성 인원과 다를 수 있음

1. 경기위원장 및 고문, 경기부위원장 · 경기팀장 · 경기위원(보)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협회 사무국 담당 직원이 이를 겸임한다.
2. 경기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 처리한다.
3. 경기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경기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경기위원장의 부재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 및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선발기준)

위원회의 구성은 경기위원장, 경기부위원장, 경기팀장, 경기위원, 경기위원보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경기위원장, 경기부위원장, 경기팀장은 전문경기 위원으로 연봉제로 운영한다.

1. 경기위원장

직 책 항 목		경기위원장
자 격	공 통 자 격	가.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나. R&A 또는 KGA 룰 테스트를 1회 이상 통과한 자 다. 국내 투어 대회 시 원활한 경기운영 가능한 자 라. 해외 투어와의 공동 주관대회 시 원활한 경기운영가능한 자 마.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자 바. 해외 출국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자 자. 이밖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차. 경기위원장으로서 Full Job 근무가 가능한 자 카. 현재 투어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프로 지망생 또는 프로를 레슨 하지 않고 있는 자
	회 원 자 격	가. 협회에서 회원 자격관련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징계기간이 종료된 자는 응시가능) 나. KLPGA 경기위원으로서만 6년 이상의(응시시점기준의 경력을 산정함)경력을 가진 자
	비회원 자 격	가. KLPGA 또는 유관단체(해외단체 포함) 경기위원 또는 그에 준하는 만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경기위원보, 경기위원, 경기팀장, 경기부위원장

직 책 항 목		경기위원보	경기위원	경기팀장	경기부위원장
자 격	공통자격	가. 만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단,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위원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판단 되는 자는 경기위원장 제청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나. 국내 투어 대회 시 원활한 경기운영 가능한 자 다. 해외 투어와의 공동 주관대회 시 원활한 경기운영 가능한 자 라.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자 마. 해외 출국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자 아. 이밖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경기위원으로서 Full Job 근무가 가능한 자 차. 현재 투어 활동을 하지 않으며(시니어투어 제외), 프로 지망생 또는 프로를 레슨하지 않고 있는 자 카. 경기위원(보)은 어떠한 경우에도 캐디를 할 수 없다. 타. 경력자는 KLPGA 경기위원으로서 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만 해당 됨(경기위원보 경력 제외)			
	회원자격	협회에서 회원 자격관련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징계기간이 종료된 자는 응시가능)			
	우대사항	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회화 능력이 능통한 자 나. KLPGA 또는 유관단체(해외단체 포함) 경기위원의 경력이 있는 자 다. R&A 또는 KGA 레프리 시험을 1회 이상 통과한 자	직책자격 참조		
	직책자격	본 위원회 최초 임회일자로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활동한 경기위원보 중 종합평가(제5조 참조)를 거친 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정식 경기위원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가. KLPGA 위원회 임회(위원보 경력 포함) 5년 이상 경력자 나. R&A 룰 테스트 또는 KGA 룰 테스트를 1회 이상 통과한 자 다. 당해연도 전체 경기위원 인원수 기준 20% 이내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 시즌 중에도 경기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경기위원장이 판단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경우 이사회에서 경기팀장을 교체할 수가 있다.	가. 위원회 임회(위원보 경력 포함) 6년 이상 경력자 나. R&A 룰 테스트 또는 KGA 룰 테스트를 1회 이상 통과한 자	
		단, KLPGA 유관단체(해외단체 포함)에서 각 직책에 요구되는 경력을 가진 자는(위원 2년 이상, 팀장 5년 이상, 부위원장 6년 이상) 그 경력이 합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각 직책의(위원, 팀장, 부위원장)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평가 및 해촉)

1. 평가항목

평가자 대상자	상근임원	위원장	부위원장	팀장	동료평가	KLPGA 룰 테스트	비고
위원장	평가 비율 미정 (※ 추후 평가 비율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이사회 승인 ↓ 회장이 재위촉
부위원장						70%	
경기팀장						70%	
경기위원(보)						70%	

- 고문 및 경기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경기위원(부위원장, 팀장, 위원보 등 포함)은 매년 실시되는 KLPGA 룰 테스트에 반드시 응시 하여야 한다.
- 경기위원(보)으로 응시 당시 치러진 테스트는 경기위원(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 ‘동료평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며 실제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 경기위원장은 경기 진행 중 룰 적용을 잘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해당 경기위원(보)에게 경고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 할 수 있다.
- 평가는 해당연도의 경기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며, 최종평가(KLPGA 룰 테스트 포함)는 1월까지 마친다. 단, 상황에 따라 최종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상기 평가를 통해 전체 위원(고문 제외) 하위 20%(자연해촉 등 포함, 소숫점 이하 반올림) 범위내에서 매년 해촉 및 미위촉 대상이 된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및 미위촉 대상이 된다.
 - 매년 실시되는 KLPGA 룰 테스트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친가 및 외가의 4촌 이내 친척 결혼 또는 사망, 본인의 출산, 결혼, 입원치료 등) 또는 경기분과 경기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외에 응시 하지 않은 경우.
 - 연동이 불손하여 선수들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KLPGA(T)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경기위원(보) 상호간 불협화음을 조장하거나 단합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경기위원(보)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다고 경기위원장의 판단과 상근임원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해당 경기위원(보)은 임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촉 될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정년)

직 책 구 분	경기위원보	경기위원	경기팀장	경기부위원장	경기위원장
임 기	1년	2년	1년	2년	2년
정 년	만 65세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단, 회장이 승인하는 자는 예외				없음

※ 경기위원보가 경기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체류연수는 최소한 2년이다.

- ※ 경기위원이 팀장에 선임된 경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기팀장의 임기는 1년이다.
- ※ 경기위원장 및 경기부위원장, 경기팀장, 경기위원(보)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용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제7조(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각종 선임, 해촉 및 미워촉 사항.
2. 경기위원장 또는 경기위원(보)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 승인을 요청한 경우.

제8조(의결)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경기위원장이 의결한다.
2.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위원회는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를 위하여 “KLPGA 경기분과위원회 경기위원의 역할 및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

- 가. 본(本) 규정의 제정 및 운영관리
- 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일환으로 별도의 사례비,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다. 사용할 코스의 선정과 로컬룰의 제정, 공표, 홀의 위치, 티 마크의 위치 및 풀 깎기 등 그 코스에서의 경기를 위한 준비 및 관리.
- 라. 경기의 진행 감독 및 종결.
- 마.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거 경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바. 기타 경기에 수반되는 업무.

2. 경기위원 배치원칙

출장일 투 어	코스답사	D-2	D-1 ~ 본대회	비 고
정규투어	위원장 및 경기위원 등 3명	위원장, 부위원장, 팀장 등 3명	오전 중 나머지 경기위원 합류	단, 8명 이상 출장대회 경우 대회본선 부터는 7명으로 운영
그 외 투어 및 테스트 및 시드전	위원장 또는 팀장 및 경기위원 등 3명	해당없음	출장자 전원	

- ※ 출장 대상자, 인원 및 출장일은 대회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경기위원장과 협의 후 사무국에서 작성하며, 상근임원의 결정이 최종이다.

제10조(처우)

본(本) 위원회의 경기위원(보)들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1일 기준 금액>

직 책 항 목		경기위원보 1년차	경기위원보 2년차	경기위원	전문경기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팀장)	고 문
대회 관련	수당	10만원 (대회,세팅,답사 등)	15만원 (대회,세팅,답사 등)	22만원 (대회,세팅,답사 등)	연봉제	25만원 (교통비 명목)
	추가 수당	3만원 협회가 주관하는 정규투어 및 각종 대회(드림, 점프, 시니어, 각종 테스트, 시드전 등)에 1일 120명 이상이 참가하고 1부, 2부 티오프를 운영하는 대회일에 한 함(천재지변으로 인한 추 가근무시간 발생시는 미적용)			없 음	
	식대	4만 5천원(3식 기준)				
	교통비	실비 별도 지급(대회당, 하단 참조)				
분과위원회 공식 모임		10만원			없 음	

- 모든 경기위원의 식대는 해당 대회 도착 당일 조식부터 대회 종료일 석식까지이며, 숙박비는 협회에서 일괄 지급한다.
- 협회에서는 경기위원(보)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협회에서 경기위원 개인별 가입해준 보험의 보험금 이외의 보상금은 없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14년 7월 7일부터 아래와 같이 교통비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가. 교통비 지급 기준(네이버 최적거리 기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경기위원에게만 협회에 등록된 자택기준으로 대회장 왕복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한다.

(카풀 이용 시 카풀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비용만 지급한다.)

단, 대회기간 중 골프장, 숙소, 기타 차량 사용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유류비 산정 기준	지원액 (감가포함)	교통비 산출 근거
ℓ 당 해당월 <u>평균 유가</u> (한국석유공사 기준)	ℓ 당 6km	[총거리(km) ÷ 6km(ℓ당 주행거리) × 0,000원 (ℓ당 해당월 평균 유가) + 통행료] × 2(왕복 시)

나. 대중교통(항공,철도,버스등)을 이용하여 대회장으로 이동한 경우 실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반드시 영수증 제출건에 한한다.

다. 국내외 출장 시 주차비를 지급한다.(차량 탑승인원과 무관)

제11조(재정)

본(本) 위원회의 재정은 소요예산을 산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정개정)

본(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理事會)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會長)의 승인(승인)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부칙)

본(本) 규정은 이사회(理事會)의 승인(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칙(1991. 1. 1 제정)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 1 개정)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1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8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24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2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26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17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20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4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7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25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02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